

---

#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 지침

---

2023. 1. 26.

교 육 부  
국 토 교 통 부  
중소벤처기업부

# 목 차

I. 캠퍼스 혁신파크 개요 .....	1
II. 신청 대상 및 응모 방법 .....	2
III. 평가 방법 .....	4
IV. 향후 일정[안] .....	7
V. 제출서류 작성 안내 및 양식 .....	8
VI. 주요 Q & A .....	18
VII. 사업 공모전 확인사항 .....	21

## □ 추진배경

- 미래 신산업 입지는 혁신 환경과 인적 자원이 풍부한 도심을 선호
  - 대학이 지닌 입지적 장점과 혁신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산학협력을 고도화시 대학을 새로운 혁신성장생태계로 탈바꿈 가능

## □ 주요내용

- 대학 캠퍼스 내 유휴공간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기업 공간(산학연 혁신허브\*), 주거, 문화·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
  - \* 창업기업 및 창업 후 성장기업(Post BI) 등에 저렴한 업무공간을 제공하는 공간
  -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플랫폼으로 구축

## □ 지원사항

- 사업비\* 보조(수도권 95.2억[20%], 비수도권 190.5억[40%])
  - \* 사업비 : 단지(약 2만㎡)\*\* 조성비 및 산학연 혁신허브 건축비
    - (재원조달 구조) 국비(정액), 지방비, 운영수익(산학연 혁신허브 임대수익, LH등)
  - \*\* 산업단지 규모에 상한은 없으나, 약 2만㎡ 초과 부분은 2단계 사업으로 대학 자체부담 시행

## □ '23년 후보지 선정 규모 : 2개소

## □ 기대효과

- 첨단산업 일자리 창출, 창업 및 창업 후 성장 기업의 생존을 향상, 대학 유휴 부지 효율적 활용하여 고밀도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

## II

## 신청 대상 및 응모 방법

### □ 신청 대상 ※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
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, 제2호에 해당하는 대학, 산업대학
- 2023년도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
-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서울시 내에 있는 캠퍼스 부지가 아닐 것
  - \* 서울시 내에 캠퍼스를 가진 대학이 서울시 외에 또 다른 캠퍼스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 외에 있는 캠퍼스를 대상으로 신청 가능

### □ 신청 조건

- 도시첨단산업단지 신청 사업부지는 1만㎡ 이상일 것
  - 신청 사업부지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일 것
  - 기존 건축물의 대지면적을 포함하여 1만㎡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도 허용. 다만,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일반적인 산업단지 조성 기준과 동일하게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50%미만이어야 하며, 기존 건축물은 캠퍼스 혁신파크의 취지에 맞게 활용되어야 함
    - \*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등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포함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
      - i) 기존 이용상태가 양호하여 새로운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
      - ii)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용도로 이용
      - iii)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
- 도시첨단산업단지 신청 사업부지 중 교지는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
  - i) 학교의 교지 총 면적에서 신청 사업부지의 면적을 제외하고도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5조에서 정한 교지기준면적을 충족할 것
  - ii) 신청 사업부지의 활용도가 낮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학교의 장이 인정할 것

○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\* 면적은 전체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\*\*의 40% 이상이 되도록 계획할 것

\* 공장, 지식산업관련 시설, 문화산업 관련시설,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,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, 자원비축시설, 물류시설, 교육·연구시설 등의 용지(법 제2조 제7의2호)

\*\* 도로, 공원, 녹지 등 조성 후 무상으로 이용되는 용지를 제외한 면적

○ 개발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(한국토지주택공사, 지방공사 등)이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관련 인·허가 및 단지 조성 등을 공동으로 수행 가능\*한 대학일 것

\* 공동사업 시행시 발생하는 비용(조사설계·영향평가·지형측량·토질조사 등 용역비용, 생태계보전부담금·개발부담금(수도권)·제세공과금 등) 부담 필요

## □ 응모 방법

○ 응모기간 : '23. 1. 27(금) 9시 ~ 3. 7(화) 18시

○ 응모방법 : 신청공문(전자문서)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\*로 송부

\* 담당자 :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남혜림 주무관(044-201-3683)

- 공모신청서\*, 사업제안서 요약서, 사업제안서도 전자문서로 공문에 첨부\*\*

\* 공모신청서는 신청기관장 등 직인 날인하고 스캔하여 첨부

\*\* 문서24(open.gdoc.go.kr) 활용시 대용량 파일(500MB) 첨부 가능

- 아래 서류는 인편 또는 우편으로 수신처\*에 별도 제출

\* 수신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처 도시첨단사업부(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(충무공동 227-2)), '23.3.7.(화) 18:00까지 수취분에 한함

\*\* 담당자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처 김정웅 차장(055-922-4820)

### < 아 래 >

- ① 신청공문(원본, 신청기관장 직인 날인) 1부
- ② 공모신청서(원본, 신청기관장 직인 날인) 1부
- ③ 사업제안서 요약서 15부
- ④ 사업제안서 15부
- ⑤ 사업제안서 원본 파일(PDF형태)을 저장한 USB 1개

### Ⅲ

## 평가 방법

#### □ 기본 방향

- 교육부·국토교통부·중소벤처기업부가 9인 내외 민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의 객관성·공정성 제고

#### □ 평가 방법 : 서면평가, 현장실사, 종합평가 順으로 진행

- (서면평가) 대학이 작성한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서면평가를 진행하여 선정개소의 3배수 이내(6곳 이내)에서 현장실사 대상지 선정
- (현장실사) 현장 실태를 확인하고 서면내용의 사실 관계 확인
  - \*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분리하여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, 현장실사에서는 서면평가에서 제시된 사항을 확인(질의응답 등)하는 방식으로 추진
- (종합평가) 서면평가, 현장실사 결과를 종합하고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후보지 선정

#### □ 평가 지표

대구분	세부지표	배점
도시첨단 산업단지로서의 개발 타당성 (35점)	개발계획의 합리성(비전·목표, 계획, 규모 적정성, 사업 타당성 등)	13
	정부, 지자체 관련 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가능성	12
	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및 도시서비스 확보 가능성	5
	기존 캠퍼스와의 조화 및 학습여건 보호 가능성	5
대학의 사업추진 역량과 의지 (30점)	대학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과의 부합성	5
	대학(캠퍼스 단위) 산학협력 및 기업육성 관련 역량과 기존 실적	10
	대학 내 주체 간 합의 및 사업추진체계 확보	5
	캠퍼스 혁신파크(단지, 건축물) 운영 및 활용 계획	10
기업 유치 및 기업지원 기관의 참여 가능성 (25점)	기업유치 가능성 및 기업입지 수요	6
	창업기업지원기관의 캠퍼스 혁신파크 입주 계획 및 유치 가능성	6
	대학의 캠퍼스 혁신파크 입주기업 지원 방안	7
	입주기업·기관과 인근지역 산업생태계와의 네트워크 가능성	6
지자체의 행·재정적 사업지원 의지 (10점)	입주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	2
	지방재원 확보 가능성(지방보조금 규모에 따른 차등화)	2
	캠퍼스 혁신파크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기여방안	6
균형발전 가점(2점)	시도별 균형발전 핵심지표(균형위, '22)를 활용	2

## □ 평가 지표별 세부 평가사항

※ 각 세부 평가지표를 '매우 우수- 우수-보통-미흡-아주미흡'로 구분하여 평가

### ○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의 개발 타당성(35점)

세부지표	세부 평가 사항
개발계획의 합리성 (13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의 비전, 목표, 추진전략 수립</li> <li>○ 사업추진계획 및 개발계획 적합성</li> <li>○ 사업규모 및 적정성 검토</li> </ul>
정부, 지자체 관련 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가능성 (12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앙정부 관련 정책·사업과의 연계 가능성</li> <li>- 창업중심대학, 규제자유특구 및 기타 정부 부처 사업 등</li> <li>○ 지자체 관련 정책·사업과의 연계 가능성</li> </ul>
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및 도시서비스 확보 가능성 (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캠퍼스 내 및 그 인근지역의 정주여건 확보 또는 그 계획</li> <li>○ 대중교통 접근성, 문화시설 등 도시적 서비스 기능에 대한 접근성 등</li> </ul>
기존 캠퍼스와의 조화 및 학습여건 보호 가능성 (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캠퍼스와의 기능적·경관적 조화</li> <li>○ 출입로, 주요 동선을 고려한 기존 캠퍼스 학습 여건 보호 방안</li> </ul>

### ○ 대학의 사업추진 역량과 의지(30점)

세부지표	세부 평가사항
대학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과의 부합성 (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학 자체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에 있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필요성</li> <li>○ 기존 교사 및 교지의 산학연 협력 활용계획 여부</li> <li>○ 대학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</li> </ul>
대학(캠퍼스 단위) 산학협력 및 기업육성 관련 역량과 기존 실적 (1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학에서 육성한 기업실적, 산학협력실적 및 창업지원 등에 대한 그간의 우수 사례</li> <li>○ 캠퍼스 소재 학과, 학부생, 대학원생, 교원 및 지원체계 수준</li> <li>○ 대학 보유 공동활용연구장비, 시제품 제작 등 관련 장비 구축 및 활용정도</li> </ul>
대학 내 주체간 합의 및 사업추진체계 확보(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학 내 주체간(교직원, 학생 등) 합의 및 유치노력</li> <li>○ 사업추진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계획, 사업단장 및 추진조직의 위상</li> </ul>
캠퍼스 혁신파크(산업단지, 건축물) 운영 및 활용 계획 (1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캠퍼스 혁신파크 및 산학연 혁신허브 운영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및 추진가능성</li> <li>○ 산학연 혁신허브 공용공간 활용 및 지원계획</li> <li>○ 예산 확보 및 활용 계획</li> </ul>

○ 기업 유치 및 기업지원기관의 참여 가능성(25점)

세부지표	세부 평가 사항
기업유치 가능성 및 기업입지 수요(6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학 내 창업기업 등의 입주수요</li> <li>○ 기존 첨단산업 관련 기업(지식, 문화, 정보 통신 등) 입주 수요와 유치계획</li> </ul>
창업·기업지원기관의 캠퍼스 혁신파크 입주 계획 및 유치 가능성(6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메이커스페이스 등 시제품제작소, 엑셀러레이터, 벤처캐피탈, 기타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시설 등의 입주 계획 및 유치 가능성 (대학 내 유치 또는 대학의 직접운영 계획)</li> </ul>
대학의 캠퍼스 혁신파크 입주기업 지원 방안(7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캠퍼스 내 산학협력 프로그램, 연구개발장비 등의 활용·연계 등 지원계획</li> <li>○ 캠퍼스 내 편의시설의 연계 및 활용 계획</li> </ul>
입주 기업·기관과 인근지역 산업생태계와의 네트워크 가능성(6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근 기업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혁신파크 입주기업·기관에 대한 지원 계획</li> </ul>

○ 지자체의 행·재정적 사업지원 의지(10점)

세부지표	세부 평가 사항
입주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(2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자체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</li> <li>○ 그 외의 지원역량 등</li> </ul>
지방재원 확보 가능성(2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발에 대한 지방보조금 확보 규모 * 110억원 이상 확보시 2점, 110억원 미만 확보시 1점</li> </ul>
캠퍼스 혁신파크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기여방안(6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발 관련 인허가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방안</li> <li>○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원방안(기반시설 유지·보수 등 포함)의 적극성·구체성</li> </ul>

○ 균형발전 가점(2점)

세부지표	세부 평가 사항
균형발전 가점(2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도별 균형발전 핵심지표(균형위, '22.12월)에 따라 가점 부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위 4개 시도*(가점 없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서울, 경기, 인천, 세종</li> </ul> </li> <li>- 그외 13개 시도(가점 2점 부여)</li> </ul> </li> </ul>



IV

향후 일정(안)

절차	주요내용	시기	담당
사업 공모	공고 및 공문시행 (3개 부처 홈페이지)	1.26	교육부 국토부 중기부
↓			
신청서 제출	사업제안서 등 제출	1.27~3.7	대학
↓			
평가단 구성 및 평가 시행	평가위원회 구성 서면검토, 현장실사, 종합평가	3월末	교육부 국토부 중기부
↓			
평가결과 통보	선정결과 통보	4월初	교육부 국토부 중기부
↓			
업무협약 체결	업무협약 체결	결과통보 후	대학 공공기관
↓			
산단계획 신청	산단계획 등 인허가 신청	소요기간 (12개월)	대학 공공기관
↓			
산단계획 승인	승인 및 지정	'24.12월 (예정)	국토부 교육부(협의)

V

제출서류 작성안내 및 양식

I

공모 신청서

[양식 1]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 신청서

캠퍼스 혁신파크 공모 신청서		
요 청 자	대학명	○○대학교
	부서명	○○과
	주관기관장 / 실무담당자	성 명 : / 전 화 : / 휴대전화 : /
신 청 내 용		
사업명칭	○○캠퍼스 혁신파크	
사업위치	○○도 ○○시 ○○동	
사업면적	○○.○m <sup>2</sup>	
사업내용	세부사업 요약	
<p>위와 같이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며, 해당 자료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적인 오류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.</p> <p>&lt;붙임&gt; 사업제안서 (요약서 포함) 15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3년 0월 00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○ ○○ 대학교 (총장 직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국토교통부장관 귀하</p>		

**II****사업제안서 요약서**

[양식 2] 사업제안서 요약서

※ 총 2페이지 이내, 항목별 분량은 조정 가능

<b>대학명</b>	○○대학교
<b>사업개요</b>	■ 사업위치 : ○○도 ○○시 ○○동 .....
	■ 사업면적 : 00,000m <sup>2</sup> (1단계 00,000m <sup>2</sup> , 2단계 00,000m <sup>2</sup> )
	■ 사업기간 : 00년~00년 (1단계 00~00년, 2단계 00~00년)
<b>도시첨단 산업단지로서의 개발 타당성</b>	■
<b>대학의 사업추진 역량과 의지</b>	■
<b>기업 유치 및 기업지원기관의 참여 가능성</b>	■
<b>지자체 지원 의지</b>	■

## ○○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제안서

2023. 0. 00.

### 작성요령

- 사업제안서는 15부 제출
  - (구성) 표지, 목차, 본문(50쪽 이내), 참고/증빙자료(100쪽 이내)
  - 표지, 도면은 분량에서 제외
- 사업계획서 본문은 아래 목차의 순서에 맞게 작성 제시함(목차 순서 변경불가)
  - 불필요한 미사여구는 최대한 자제하고 실질적인 사업내용과 사실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기술
  - 대학 내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실행가능한 계획 위주로, 구체적으로 작성
  - 목차에 누락 되었거나 추가적인 설명, 계획 등의 언급이 필요할 경우 추가가능
- 각 평가지표에 대한 실적과 계획은 캠퍼스 혁신파크를 지정하고자 하는 캠퍼스 단위로 작성 (대학 발전계획 등의 경우 대학 단위로 작성할 수 있으나, 이 경우에도 캠퍼스 단위를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)
- 참고/증빙자료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소화하여 첨부, 출처를 명시
  - 사업계획서 본문에 관련 내용의 위치를 표시(예시 <증빙자료 13쪽 참고>)
- 도면은 A3 횡방향으로 작성

# 목 차

I. 사업 개요 .....	0
II.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의 개발 타당성 .....	0
III. 대학의 사업추진 역량과 의지 .....	0
IV. 기업 유치 및 기업지원기관의 참여 가능성 .....	0
V. 지자체의 행·재정적 사업지원 의지 .....	0

# I. 사업개요 (HY헤드라인, 폰트 15, 줄간격 150%)

## 1. 기초현황

사업위치	○○도 ○○시 ○○동 ...
사업면적 (단계별)	※ 예시 (1단계) 00,000m <sup>2</sup> (0만평) (2단계) 00,000m <sup>2</sup> (0만평)
사업기간	※ 예시 20XX.0월~20XX.0월 (1단계 20XX~20XX, 2단계 20XX~20XX)
총사업비 (재원조달계획)	※ 예시 (1단계) 000억원 (국비 00억원, 지방비 00억원, 공공기관/민간/대학 00억원) (2단계) 000억원 (지방비 00억원, 공공기관/민간/대학 00억원)
주변여건	※ 정주여건, 교통여건 등

※ 필요시 내용 추가, 표양식 활용 등 가능

## 2. 공간적 범위

※ 1/50,000~1/25,000 지형도, 위성영상지도 등에 작성

<p>&lt;○○도 또는 광역시&gt; - 위치도1</p>	<p>&lt;○○시·군·구&gt; - 위치도2</p>
<p>※ 위치도1 : 광역지자체내에서의 해당 시·군·구의 위치 표시          위치도2 : 시·군·구내에서의 캠퍼스 혁신파크 후보지 위치 표시</p> <p>※ 지형도내에 적당한 여백을 활용하여 주요 산업시설, 대학, 연구소 등의 위치와 사업장소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표기</p> <p>※ 공간적 범위의 개략적 경계를 표기</p>	

## 3. 기본구상(휴먼명조, 폰트 15, 줄간격 150%)

※ 단계별로 조성목표 컨셉 공간계획 주요 유치업종 등 추진계획 핵심 요약, 기대효과 등 제시

## II.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의 개발 타당성

### 1. 개발계획의 합리성

#### ※ 포함사항

- 사업의 목표와 비전(도식화)
- 사업추진계획 및 개발계획(구상안)
  - (산단 조성) 부지 확보 여부, 문화재 지표조사(조사결과 첨부), 지형여건(지장물, 수목, 도시가스관로, 경사 현황, 매립폐기물 유무 등), 상하수도 연계처리 가능여부(지자체 협의 문서 첨부) 등 포함
  - (산학연 혁신허브 조성)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경우 건축물 현황(규모, 노후도 등), 리모델링 구상안(입면계획, 개략 공사비, 구조적 안정성 등), 기업 입주에 따른 기존 건축물 내·외의 설비·기반시설 여유용량 확보방안 등 포함
- 사업규모(공간조성, 자원조달 규모 등) 및 적정성 검토

□ 소제목 (휴먼명조, 폰트 15, 줄간격 150%)

○ 본문(휴먼명조, 폰트 15, 줄간격 150%)

\* 참고내용(중고딕, 폰트 13, 줄간격 150%)

## 2. 정부, 지자체 관련 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

### ※ 포함사항

- 중앙정부 관련 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
  - 창업중심대학, 규제자유특구 및 기타 정부 부처 사업 등
- 지자체 관련사업과의 연계 가능성

## 3.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및 도시서비스 확보 가능성

### ※ 포함사항

- 캠퍼스 내 및 그 인근지역의 정주여건 확보 또는 그 계획
- 대중교통 접근성, 문화시설 등 도시적 서비스 기능에 대한 접근성 등

## 4. 기존 캠퍼스와의 조화 및 학습여건 보호 가능성

### ※ 포함사항

- 캠퍼스와의 기능적·경관적 조화
- 출입로, 주요 동선을 고려한 기존 캠퍼스 학습여건 보호 방안



### Ⅲ. 대학의 사업추진 역량과 의지

#### 1. 대학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과의 부합성

※ 포함사항

- 대학 자체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에 있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필요성
- 기존 교사 및 교지의 산학연 협력 활용계획 여부
- 대학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

#### 2. 대학(캠퍼스 단위) 산학협력 및 기업육성 관련 역량과 기존 실적

※ 포함사항

- 대학에서 육성한 기업실적, 산학협력실적 및 창업지원 등에 대한 그간의 우수 사례
- 캠퍼스 소재 학과, 학부생, 대학원생, 교원 및 지원체계 수준
- 대학 보유 공동활용연구장비, 시제품 제작 등 관련 장비 구축 및 활용정도

#### 3. 대학 내 주체간 합의 및 추진체계

※ 포함사항

- 대학 내 주체간 합의 및 유치노력
  - 교직원(학교법인 이사회, 교무회의 등), 학생(학생회 등) 합의
- 사업추진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계획, 사업단장 및 추진조직의 위상

#### 4. 캠퍼스 혁신파크(단지, 건축물) 운영 및 활용 계획

※ 포함사항

- 캠퍼스 혁신파크 및 산학연 혁신허브 운영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및 추진가능성
- 산학연 혁신허브 공용공간 활용 및 지원계획(가구, 집기, 전자기기 등 입주기업 기본 인프라 확보 및 제공방안 포함)
- 예산 확보 및 활용 계획 등

## IV. 기업 유치 및 기업지원기관의 참여 가능성

### 1. 기업유치 가능성 및 기업입지 수요

#### ※ 포함사항

- 대학 내 창업기업 등의 입주수요
  - \* 입주수요는 자체 수요 검증이 아닌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분석자료로 활용할 것
- 기존 첨단산업 관련 기업(지식, 문화, 정보통신 등) 입주 수요와 유치계획
- 주요 유치업종 등 제시

### 2. 창업·기업지원기관의 캠퍼스 혁신파크 입주 계획 및 유치 가능성

#### ※ 포함사항

- 메이커스페이스 등 시제품제작소, 엑셀러레이터, 벤처캐피탈, 기타 창업 및 기업성장지원시설 등의 입주 계획 및 유치 가능성(대학 내 유치 또는 대학의 직접운영 계획)

### 3. 대학의 캠퍼스 혁신파크 입주기업 지원 방안

#### ※ 포함사항

- 캠퍼스 내 산학협력 프로그램, 연구개발장비 등의 활용 지원계획
- 캠퍼스 내 편의시설의 연계 및 활용 계획

### 4. 입주기업·기관과 인근지역 산업생태계와의 네트워크 가능성

#### ※ 포함사항

- 인근 기업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혁신파크 입주기업·기관에 대한 지원 계획 등

## V. 지자체의 행·재정적 사업지원 의지

### 1. 입주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

**※ 포함사항**

- 지자체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(입주기업 임대·관리비 보조·지원 등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원 및 관리 방안 등 포함)
- 그 외의 지원방안

### 2. 지방재원 확보 가능성

**※ 포함사항**

- 개발에 대한 지방보조금 확보 규모, 방안
- \* 지방 재정지원은 구체적 증빙을 첨부할 것

### 3. 캠퍼스 혁신파크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기여방안

**※ 포함사항**

- 개발 관련 인허가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방안
-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원방안(기반시설 유지·보수 등 포함)

## &lt;&lt; 신청조건 관련 &gt;&gt;

## 1. 대학교지가 아닌 부지까지 포함하여 사업계획 작성 가능한지?

- 국유지, 공유지에 한하여 교지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가능함
- 다만, 대학이 아닌 다른 소유자의 토지를 포함하는 경우 사업의 추진 가능성 등을 위해 해당 소유자와 대학교 간 합의(MOU 등)가 전제되어야 함

## 1-2. 대학교지가 아닌 대학 소유의 별도 토지 또는 다른 소유자의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신청이 가능한지?

- 우수한 인적·물리적 혁신역량을 보유한 대학의 유휴부지를 활용한다는 캠퍼스 혁신파크의 추진 방향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안됨

## 2. 연접하지 않은 둘 이상의 토지를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한지?

-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토지가 유기적(교통, 생활환경의 연속성 등)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가능

---

3. 산업단지 신청 기준면적 1만㎡ 이상에 기존 건축물의 부지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?

---

기존 건축물의 대지면적을 포함해 1만㎡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음

\* 선도사업의 경우 성과 조기창출 등을 위해 나대지로만 최소 1만㎡를 충족할 것을 요구한 것과 달리 이후 공모에서는 기존 건축물을 포함하는 경우도 허용

○ 다만,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기존 건축물(존치시설)의 부지가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50% 미만이어야 하며,

- 기존 건축물은 캠퍼스 혁신파크의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하고, 캠퍼스 혁신파크 발전에 기여하지 않거나 기능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건물은 포함 불가\*

\* 불가피하게 기존 건축물 포함 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의 지장이 없도록 조성공사 착공 전 철거 필수

---

4. 신청 시 공동으로 시행할 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서를 제출해야 하는지?

---

신청 당시 체결한 협약서 제출할 의무는 없음

○ 다만,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아닌 지방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추진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공공기관과의 사전 협의 등을 진행하여야 할 것

---

5. 공동사업시행자로서 대학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지?

---

대학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 지정 인·허가 관련 용역비 일부와 부담금 등(개발부담금<sup>수도권</sup>, 생태계보전부담금, 제세공과금 등)을 부담할 수 있음

\* 공동 사업시행자(LH 등)와의 비용 분담비율은 기관 간 협의하여 정함

---

6. 사업계획의 범위를 ① 국비 지원 검토 부분(단지면적 2만㎡)이하하여 작성하는 것인지? ② 장기적인 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?

---

- 대학교 발전계획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을 작성할 필요
  - 다만 1단계(국비지원범위) 및 2단계 이후(대학시행범위)를 구분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계획 등 수립

<< 기타 >>

---

7. 캠퍼스 혁신파크는 앞으로 총 몇 개나 선정?

---

-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할 사항으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나, 캠퍼스 혁신파크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

사업 공모전 확인사항

연번	체 크 사 항	확 인 방 법
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(1만㎡ 이상)</li> <li>* 산업입지법 제2조제8호다목</li> <li>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3조제7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</li> </ul>
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교지기준면적 충족</li> <li>* 대학설립·운영 규정 제5조제1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[교지면적-대상지면적] &gt; 교지기준면적*</li> <li>* 대학설립·운영 규정 [별표 4]</li> </ul>
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산업시설용지 면적은 산업단지 유상 공급면적의 40% 이상</li> <li>* 산업입지법 제6조제8항, 시행령 제7조제5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산업시설용지면적/[산업단지 면적-(도로, 하천, 공원, 녹지 등 공공시설 면적)] &gt; 40%</li> </ul>
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존 건축물 포함 여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존 건축물 포함 시 대지면적은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50%미만이어야 하며, 사업 취지에 적합한 활용계획 수립</li> <li>철거 필요시 단지조성공사 착공전 철거 완료 조건</li> </ul>
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도권지역 행위제한</li> <li>*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, 제8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성장관리권역* 산업단지 공급물량 제한</li> <li>과밀억제권역* 공업지역 대체지정</li> <li>*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[별표 1]</li> </ul>
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도권지역 개발부담금 납부</li> <li>*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제3항제1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[부과 종료시점의 토지가액-부과 개시 시점의 토지가액-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-개발비용] × 20%</li> </ul>
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생태계보전부담금</li> <li>*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대상)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 (산정) 생태계훼손면적(㎡)×단위면적당 부과금액(원/㎡)×지역계수</li> </ul>
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개발제한구역(GB) 해당 여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</li> <li>GB 포함시 사업시행 불가</li> </ul>
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유지 포함 여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</li> <li>사유지 포함시 사업시행 불가</li> </ul>
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취지에 적합한 유치업종(기업) 계획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일자리 창출, 창업활성화, 지역균형 발전 적합 여부</li> <li>산학연 혁신허브는 창업기업 및 창업후 성장기업에 제공 계획 수립</li> </ul>
1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단계(대학시행분)에 대한 기반시설 조성 등 사업비 투입 가능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비 투입 계획 수립</li> </ul>

※ 이 외에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검토 및 조치 필요  
 ※ 국토계획법: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, 산업입지법: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, 개발이익환수법: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